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부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험 2018 - 82호

시행일자 2018. 09. 06.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시설안전과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가칭 '안전점검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협회 입장(변경)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시험 제2018-72호(2018.08.13.)의 관련으로 가칭 '안전점검 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우리 협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가. 현황에 대한 기본입장

- (1)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함께 수행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귀부의 지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거의 정밀안전진단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
- (2) 부실용역 수행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소송 등 법적조치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임.(예, '안전진단전문기관'도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예, 교량 및 터널과 관련하여 처분 받을 경우 타 분야의 입찰과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관련분야에 한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음)
- (3)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이 시장 규모와 업체당 수주량 (약 3억원정도)으로 볼 때 지나치게 높아 부실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4) 시설물안전 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점검전문기관’이 기술과 실력을 쌓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요함.

나. 협회의견

(1) 가칭‘안전점검전문기관’의 인력등록 기준을 4인(고급 1인, 중급, 초급 2인)으로 조정하고 향후 고급을 특급으로 상향.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조정(8인→6인) : 특급 1인, 고급 1인, 중급 2인, 초급 2인으로 조정

(3) 4개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로 등록 하여 부실예방

(4)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광역자치단체가, ‘유지관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어 기존의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을 광역자치단체로 등록할 경우 인력의 2중 등록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함.

(5)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만 할 수 있도록 할 것.

(6) 유사협회가 생겨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할 것.

별첨 : (1) 업종별 등록기준 비교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 업종별 등록기준 비교

등록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	엔지니어링사업자	유지관리업자	안전점검전문기관(안)
인력	분야별 8인 (특급기술자 2인, 중급이상기술자 3인, 초급이상기술자 3인)	분야별 4인 (특급기술자 1명,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기술자(초급기술자 4인)	4인(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3인)
장비	11~12종		6종	6종
자본금	1억원		3억원	5천만원
비고	추가 신고 시 8인→7인(초급,중급)	(1)추가 분야 신고시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 (2) 기술사는 특급기술자 1명+초급기술자 1명으로 인정		